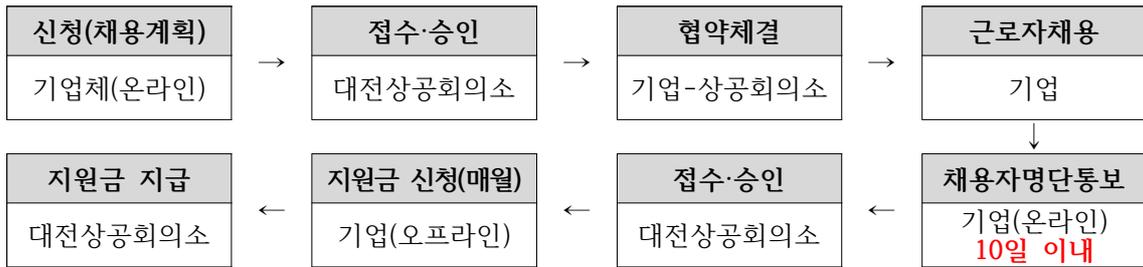


2020년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

대전상공회의소 문의 042-480-3043

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절차



* 온라인 신청: www.work.go.kr/youthjob

온라인 사업참여 신청 클릭 → 운영기관 찾기 클릭 → “대전상공회의소” 검색

▶ 담당 운영기관 선택

담당 운영기관*

운영기관찾기

➔ 1.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

- IT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(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)를 지원 *고용노동부 사업

➔ 2. 지원대상

*기업체 채용계획 승인 후 채용된 근로자만 참여 가능

○ 기업요건

- (규모)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- 5인 이상 판단 기준: 채용계획서를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
- 중소기업 판단 기준: 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
- 중견기업 판단 기준: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
- ※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·기업은 1~4인도 참여 가능
 - ①지식서비스산업 ②문화콘텐츠산업 ③신재생에너지산업
 - ④성장유망업종 ⑤벤처기업 ⑥청년창업기업(대표자 청년, 창업 7년 이내)
- (인위적 감원 제한)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
- 고용조정이력: 고용보험 전상 상 상실코드가 23-①~⑥ 및 26-③
- ※ (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시)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, 이후에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

- 기업참여 제한
 - 정부·공공기관(공운법상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)
 - 학교
 - 소비향락업·유흥·주점업
 -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(단,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는 가능)
 -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
 -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 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

○ 청년요건

- (연령) 채용일 기준으로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일 것
 - 단,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39세로 한정)
- (미취업 상태)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,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
- (참여제한)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,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
 - 단,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, 방송·통신·사이버대학·학점은행제·야간대학·대학원에 재학중인자,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/3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
- 지원제외
 -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 - 다른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 또는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
 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 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-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
 - ※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
 - ※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
 -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(관련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)

➔ 3. 지원요건

- (근로시간)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
 -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시 근로시간 명시
- (임금)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
 -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,310원('20년 최저임금 8,590원×209시간)

- (4대 보험) 4대 보험 가입 필수
- (근로기간) 정규직 또는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
 -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,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
 -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(청년), 청년추가고용장려금(기업)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(요건 충족 시)

➔ 4. 지원내용

- (대상) 채용계획 내에서 '20.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
 - 예) '20.12월 채용자의 경우 '21년도에도 최대 6개월 지원
- (지원금액)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(최대 180만원)하고 간접 노무비를(10만원) 추가 지원
 - 지원금 신청시 근로계약서(최초 1회),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제출
 - 지원금 신청기한: 청년 채용 후 9개월 차(첫달 포함) 말일 까지 지원금 신청(기간 경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)
- (지원한도)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(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)
 - 대형 IT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
- (지원금 중복지원 제한)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)

➔ 5. 지원절차

- (참여신청) 기업이 대전상공회의소에 채용계획 제출(전산시스템 활용)→대전상공회의소의 검토 및 승인→대전상공회의소·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
 - (채용) 기업은 청년 채용 후 대전상공회의소에 채용명단을 통보
 -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
 - 반드시 10일 이내에 채용명단을 통보해야 함
 - (지원금 신청)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대전상공회의소에 지원금을 신청
 - 한시사업 고려, 신청기간 경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('20.12.20.채용시, '21.8.31.까지 지원금 신청)
- ▶ 구체적인 참여자격, 참여제한 요건 등은 「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」에서 확인